

##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건축물 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을 중심으로 -

김 도 경

(주)신화컨설팅

A study on the outdoor space as plac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1% law" in Seoul

Kim, Do-Kyong

SYNWHA Consulting Co.

### ABSTRACT

It is clear that so called "1% law"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to enhance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However, after more than 10 years of its enforcement, environmental sculpture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1% law" are even being called as "sculptural pollution".

This research was a part of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sculptur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blems inherent in the outdoor space as plac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1% law".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223 environmental sculpture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spatial organization through field surveys.

1. 88.3% out of 223 environmental sculptures were located on 'public space' on study sites

2. 69.1% were placed on 'green'

3. 80.7% of 'green' were either 'point' types or 'line' types

4. 85.2% were under 5 m in the longest dimens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1% law" in Korea has been applied to only buildings in private sector where most outdoor space are in unadecuate physical and spatial conditions to install diverse form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Further studies must be carried out to install environmental sculptures in public open space as an alternative by amending "1% law".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공공 정책적 차원에서는 도시 open space를 보다 인간적인 환경으로 조성코자 질적, 문화적 차원의 문제들에 폭넓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도심 보행자 공간의 조성 등 다양한 종류의 open space를 확장시키는가 하면, 미흡하지만 법정 녹지율 확보, 그리고 도심공간에 환경조형물 설치 등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대형건축물에 예술장식품 설치를 법제화하여 도시공간 내에 예술적 심미성을 제공코자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물론 도시미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도시공간에 '미술품'은 설치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신설된 문예진흥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권장사항의 발효로부터 시작된 듯하다. 이 사항은 우선 서울시에 한하여 서울시 건축조례 제19조 5항과 시장지시 제133호에 의거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게 되었으며, 그후 1988년 7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조항에 의해 전국일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서울시의 경우는 연면적 10,000m<sup>2</sup>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7,000m<sup>2</sup>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대형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비의 1%를 반드시 예술장식품의 설치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많은 조각·회화 작품들이 대형 신축건물들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4년 말 현재 약 1,500점의 예술장식품이 서울시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sup>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 및 미술전

문가들에게서 부정적 관점에서의 비평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염연한 현실이며, 이런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도 '예술장식품 작가'들에 의해서 주로 서술되고 있으며, 조경학자나 조경설계가에 의한 '조경설계공간'에서의 '예술장식품'의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 즉, 어떠한 작품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예술장식품 중 옥외에 설치된 예술장식품의 설치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예술장식품'은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에 의해 설치된 예술장식품을 의미한다. 참고로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미술장식품과 예술장식품이라는 용어가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조사대상 목록이었던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에 따라 예술장식품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예술품이라는 것이 작가와 관찰자 사이에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내적 동일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관찰자에게 이해

1) 지금까지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에 의해 설치된 예술장식품의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단지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1987년에서 1993년 까지의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에 기록된 687건중 재심 등으로 인한 중복건수 110건을 제외한 577건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1건당 2점이상 설치된 경우도 있음), 언론 (한국경제신문, 1995.4.18.)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1994년 말 현재 약 1,500점의 예술장식품이 서울시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될 수 있으며, 관찰자의 관점, 지적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예술품에 대해 단 하나의 정당한 해석을 내리거나 대다수의 관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그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이원선, 1990). 예술품이 갖고 있는 이런 일반론적인 속성상 예술장식품 그 자체의 예술성이나 작품의 내적인 측면을 계량화한다는 것은 무의 미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부록Ⅰ)에 기재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7년간의 총 687 건 중 재심으로 인한 중복 건수 110건을 제외한 577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577건중 회화 및 실내작품이 83건, 아파트가 103건, 학교·공공기관·연구소·병원·종교시설이 29건, 호텔 및 백화점이 16건 그리고 메달과 같은 단순 심의대상이 31건 등이었는데, 회화 및 실내작품은 조경설계의 대상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공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학교·공공기관·연구소·병원·종교시설은 그 용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호텔 및 백화점은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의 강제성보다는 업무의 특성상 오히려 예술장식품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315건의 조사는 1994년 12월에서 1995년 4월까지 현장 실측과 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315건 중 공사중인 경우가 25건, 예술장식품 설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건물주나 관리인에 의해 조사 및 사진 촬영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32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술장식품이 미설치된 경우가 11건이었으며, 심의대장에 기록된 주소로는 대상을 찾을 수 없었던 경우가 45건이었다. 최종적인 조사 및 분석은 202건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며 한곳에 2점이상 설치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술장식품의 숫자는 총 223점 이었다(부록Ⅱ).

본 연구는 예술장식품 그 자체의 예술성이나 작품의 내적 측면보다는, 옥외 예술장식품이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하는 하나의 구성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예술장식품과 그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옥외 예술장식품 및 설치공간의 유형

##### 가. 설치공간의 대상부지에서의 입지 유형

옥외 예술장식품이 설치되는 공간인 대지내 공지는 단위 대지안에서 건축물 또는 부속 건축물로 견폐되지 않은 토지(학술, 기술상으로는 대지내 비건폐지)를 말하며, 주로 건축물로의 진입공간, 주차장, 조경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이며, 건축법에 따른 정의로는 건축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 및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김선미, 1986).

대지내 공지를 시각적 개방성 측면에서 개방형, 시각개방형, 폐쇄형으로 분류(손태우, 1989)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단순한 시각적 측면보다 예술장식품이 관조의 대상으로서 만져지고 느껴지는 접촉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용의 관점에서, 일반인이 예술장식품과 접할 수 있는 기회성 여부에 따라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의 대상부지에서의 입지 유형(부록Ⅲ)을 전용공간, 공용공간, 전이공간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Table 1과 같았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과 분포율을 나타냈다.

Table 1. Types of location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on study sites.

	Private space	Public space	Transitional space	Total
Number of sculptures	23	197	3	223
%	10.3	88.3	1.4	100.0

### (1) 전용공간 (private space)

: 담, 울타리, 녹지, 용벽, 기타 장치물 등의 설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통행을 막거나 관리인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건축물에의 귀속성이 강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용도의 한정, 이용자의 한정, 출입의 제한, 출입 시간대의 제한)로 23개소에 나타났으며 분석대상 223점 중 10.3%를 차지하였다(Fig. 1).

### (2) 공용공간 (public space)

: 가로변, 주차장, 공개공지 등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에 설치 된 경우(공용용도, 이용자의 무한정 출입 및 출입시간대의 무제한)를 말하며 197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난 공간이었으며 88.3%를 차지하였다

(Fig. 2-1, 2-2, 2-3, 2-4).

### (3) 전이공간 (transitional space)

: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의 전이적 성격 또는 기능을 갖는 통과, 보행, 휴식 등을 위하여 일정부분 위요되어진 공간에 설치된 경우로 3개소밖에 나타나지 않았다(Fig. 3).

민간 자본에 의해 해당 부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옥외 예술장식품의 설치 공간인 대지내 공지가 법적으로는 분명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옥외 예술장식품의 88.3%가 해당 부지에서 일반 대중에게 시각적 물리적으로 개방된 공용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의 원래의 목적인 도시가로 환경정비와 미화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

과 도로 사이의 좁은 보행 공간에서 예술장식품의 역할은 더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로의 출입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다.

Fig. 2-2는 도로와 접하는 건물의 전면에 예술장식품 설치를 위한 공간의 여유가 없어 건축물 전면부 기단에 설치된 경우이고, Fig. 2-3은 옥외 주차장의 좁은 녹지 공간에 방치된 듯 설치된 경우이며, Fig. 2-4는 수많은 간판으로 가리워져 무엇이 간판이고 무엇이 예술품인지 감상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라 하겠다.

옥외에 설치되는 예술장식품이 ‘문패 조각’, ‘간판 조각’, ‘조각 공해’로 불리어지는 이유는 이처럼 예술장식품이 도시 가로에서 혹은 대상 부지에서 하나의 구성적, 의미적 요소로서 시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주변 공간에 방치된 듯 놓여져 도시공간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상부지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최대로하여 건물과 옥외주차장을 배치한 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대지내 공지의 구조적 문제점에 더하여, 그런 조건하에서나마 단지배치계획 단계나,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의 단계에서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계획이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계획으로 진행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판단된다.<sup>2)</sup>

이처럼 옥외 예술장식품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특정의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공용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나, 예술장식품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계획이 단지배치계획이나 건축계획 조경계획 등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로 병행되어 진행 되었는지에 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설치되어있는 상태나 조경설계를 담당했던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유추해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조경설계가 예술장식품 설치계획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간혹 건축주로부터 예술장식품의 설치 위치 정도만 통보 받을 뿐 구체적인 작품의 성격을 비롯한 예술장식품 작가와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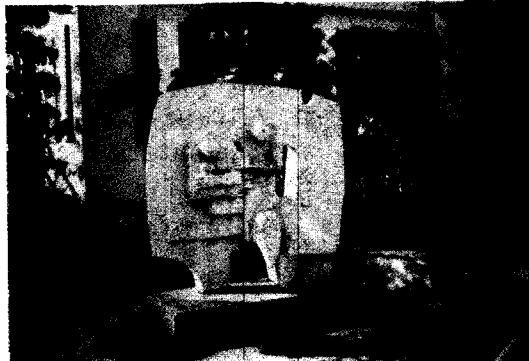


Fig 1.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private space'



Fig 2-3.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public space'



Fig 2-1.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public space'



Fig 2-4.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public space'



Fig 2-2.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public space'



Fig 3.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transitional space'

#### 나. 설치공간의 표면재료 및 녹지의 형태

대지내 공지에서 예술장식품의 설치가 가능한 공간은 식재공간, 주차공간, 보행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공간을 예술장식품 설치 부위의 표면 처리에 따라 녹지, 포장면, 그리고 일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건물전면 및 측면부의 기단부, 별도의 기단부 등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결과 분석 대상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Table 2와 같았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과 분포율을 나타냈다.

Table 2. Types of paving materials for environmental sculptures

	'Green'	Hard paving	Etc.	Total
Number of sculptures	154	39	30	223
%	69.1	17.5	13.5	100.0

(1) 녹지('green') : 교목, 관목, 잔디, 지피류 등의 식재를 위한 녹지에 설치된 경우를 말하며 154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난 공간이었으며 69.1%를 차



Fig. 4-1.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green'

지하였다(Fig. 4-1, 4-2).

(2) 포장면(hard paving) : 주차공간 및 휴게공간, 보행공간 등 다양한 포장재를 활용한 포장면(흙, 모래 등의 포장재도 포함하며 잔디, 지피포장은 녹지로 분류)에 설치된 경우로 39개소에 나타났으며 17.5%를 차지하였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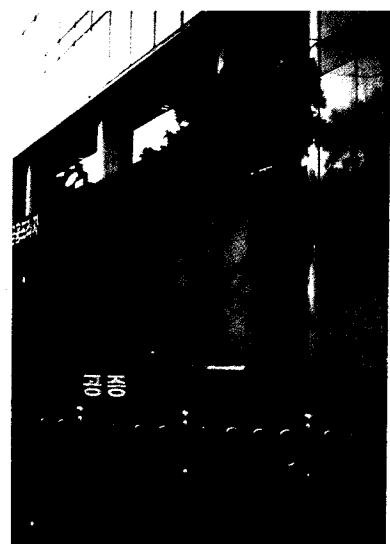


Fig. 4-2.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green'



Fig. 5.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hard paving'

(3) 기타(etc.) : 건물전면 기단부(Fig. 2-2) 및 측면 기단부 (Fig. 6), 별도의 기단부, 계단부, 벽천 등 수경 공간을 말하며 30개소에 나타났으며 13.5%를 차지하였다.



Fig. 6.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building foundation wall

분석 대상지에서 볼 수 있는 녹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녹지의 폭 역시 1m 이상에서부터 20m 이상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녹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점·선·면의 3 가지 유형으로 옥외 예술장식품이 설치되는 녹지의 형태를 분류한 결과 Table 3과 같았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과 분포율을 나타냈다.

Table 3. Types of 'green' as a place of environmental sculpture

	Point	Line	Plane	Total
Number of sculptures	46	134	43	223
%	20.6	60.1	19.3	100.0

(1) 점적 형태(point) : 최대폭 또는 지름 5m 미만의 정방형, 장방형, 원형, 타원형, 삼각형 등의 형태를 이루며 점적인 형태가 우세한 녹지로 46개소

에 나타났으며 20.6%를 차지하였다 (Fig. 7-1, 7-2).

(2) 선적 형태(line) : 최대폭 5m 미만으로 직선형, 곡선형, 자유선형 등의 형태를 이루며 선적인 형태가 우세한 띠를 이루는 녹지를 말하며 134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로서 전체의 60.1%를 차지하였다 (Fig. 8-1, 8-2).



Fig. 7-1.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green - 'point'



Fig. 7-2.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green -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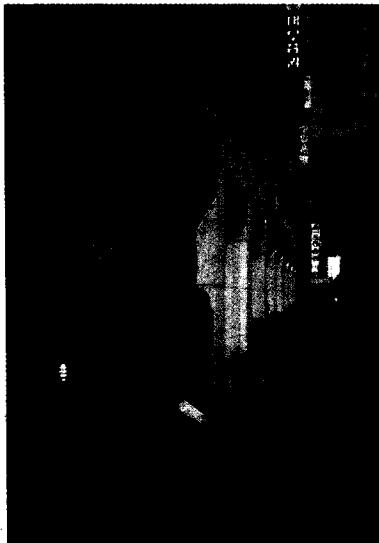


Fig 8-1.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green - 'line'



Fig 8-2.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green - 'line'

(3) 면적 형태(plane) : 최대폭 또는 지름 5m 이상의 방형, 원형, 또는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면적인 형태가 우세한 녹지로 43개소에 나타났으며 19.3%를 차지하였다(Fig. 9).



Fig 9. Environmental sculpture placed on green - 'plane'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의 표면재료 중 녹지가 69.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겠다. 첫째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일정률<sup>3)</sup>의 조경면 이 해당 부지에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예술장식품이 생활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분석대상 예술장식품의 82.1%가 좌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부록Ⅱ) 작품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작품의 손상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며, 이런 점은 포장면에 설치된 경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Fig. 5).

예술장식품이 녹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지 포장면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지는 그 작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문제는 녹지의 형태가 대부분 점적형태(Fig. 7-1, 7-2)나 선적형태(Fig. 8-1, 8-2)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부지에서 법정 건폐율과 용

3) 서울시 건축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200m^2$  이상의 부지로서 연면적이  $1,000m^2$  미만일 때는 대지면적의 5% 이상,  $1,000m^2$  이상  $2,000m^2$  미만일 때는 10% 이상,  $2,000m^2$  이상일 때는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해야 한다.

적율을 최대로 하여 건축물과 옥외 주차장을 배치한 후 보행자 및 차량 동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며, 법정 조경면적 산정을 그 면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 모두를 유효면적<sup>4)</sup>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좁은 녹지공간에서 법정수목분수<sup>5)</sup>의 식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식할 수 밖에



Fig 10. Alexander Calder, "Flamingo", 1973 (Red painted steel, 1,500×700×1,800cm)  
Chicago, U.S.A. (대한건축사협회,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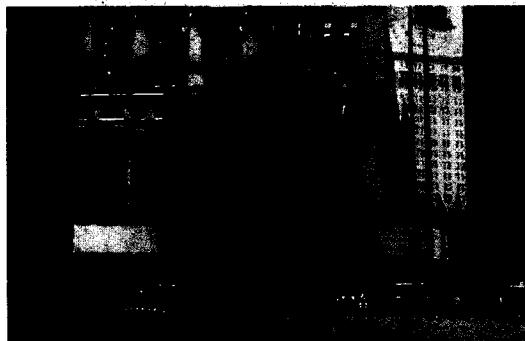


Fig 11. Isamu Noguchi, "Red Cube", 1968 (Red painted steel, 300×300×730cm) New York, U.S.A. (대한건축사협회, 1986)

없으며, 수목이 예술품의 배경적 요소가 아니라 시각 방해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Fig. 4-1, 4-2).

이처럼 예술장식품의 설치는 해당 부지가 도시 구조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건, 그리고 해당 부지에서 대지내 공지의 물리적·공간적 성격이 어떠하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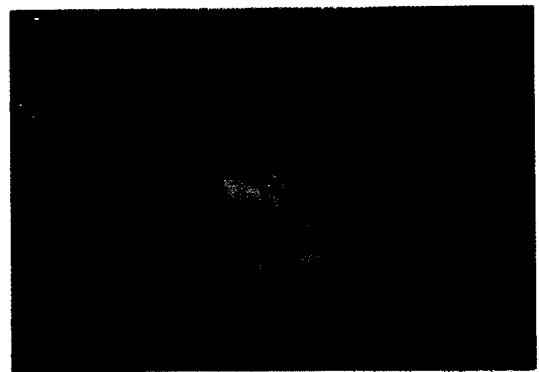


Fig 12. Jean Dubuffet, "Four Trees", 1972 (F.R.P. Cement, 600×200×1,200cm) New York, U.S.A. (최병상,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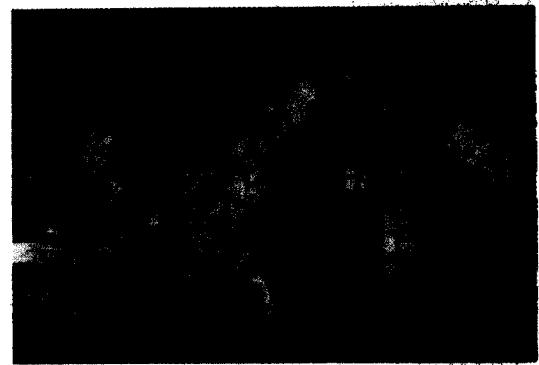


Fig 13. Armand Baillancourt, "The Big Fountain", 1971 (Cement, Bronze Bolt, 3,500×600×700cm) San Francisco, U.S.A. (최병상, 1990)

4) 서울시 건축조례 제32조 참조

5) 서울시 건축조례 제32조에 의하면 교목은 0.2본/m<sup>2</sup> 이상, 관목은 0.1본/m<sup>106</sup> 이상이며, 수고 2m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상록수 30% 이상) 식재하여야 함.

### 라. 옥외 예술장식품의 규모

분석대상 작품의 규모 또한 중·소형 위주의 작품이 85.2%로 과연 도시 규모에 적합한가에 의문점을 제시한다 하겠다. 물론 미국의 대도시에서 많이 접하는 대형 추상 조각(Fig. 10, 11, 12, 13)이 예술장식품이 지향해야 할 성격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는 건축물,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인 녹지에서의 수목, 갖가지 형태의 무

Table 4. Siz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Small (below 2m)	Medium (2m~5m)	Large (over 5m)	Total
Number of sculptures	33	157	33	223
%	14.8	70.4	14.8	100.0

\*the longest dimension in width, length and height



Fig 14-1. Environmental sculpture - small siz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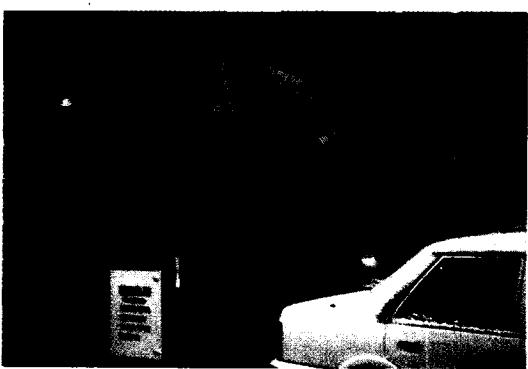


Fig 14-2. Environmental sculpture - small size -

수한 간판, 차량의 홍수 등으로 그 존재 자체가 대중의 눈에 띄기 어려운 규모의 예술장식품은 바람직한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분석대상 작품을 규모별로 소형(Fig. 14-1, 14-2), 중형(Fig. 15), 대형(Fig. 16)으로 분류하면 Table 4와 같았다.

이와 같이 규모에 있어서 중·소형의 작품이 설치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선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해당부지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품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작품자체를 위한 공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설치공간의 유



Fig 15. Environmental sculpture - medium siz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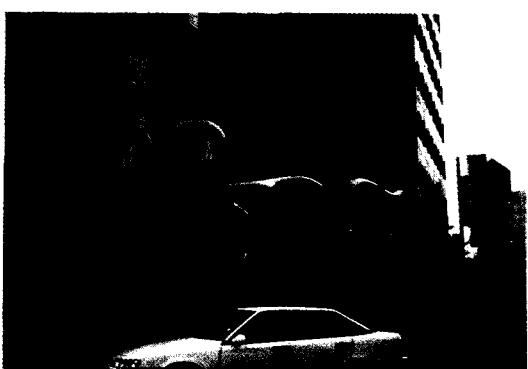


Fig 16. Environmental sculpture - large size -

형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69.1%의 예술장식품이 녹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녹지의 형태가 대부분 점이나 선적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나 장르의 예술장식품의 설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예술장식품 설치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로 규정함으로써, 그리고 1%의 금액을 실내·실외 작품 등에 분산하여 몇 점씩 설치해 도 별도의 규제가 없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 2. 적용대상 건축물 및 설치공간에서의 문제점

우리의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과 유사한 제도, 즉 건축비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의 시작은 프랑스이며, 1951년에 성립되어 1960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을 보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 1986). 처음에는 문부성의 건축물에 건축 예산의 1%를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문화, 방위, 농업성의 공공건물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이 공공건축물이 아닌 민간부문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는 「미술을 건축에(Art in Architecture)」라는 공공미술정책을 주관하는 「공공시설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 GSA)」이 있어서 미연방정부관계의 공공건축물에 건축비용의 0.5%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쓰도록 1963년부터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GSA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미국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NEA)이며 1966년부터 250만 달러로 시작하여 1981년에는 그 기금이 16,800

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의 대도시에서 자체예산이나 공공기금으로 운영하는 1% 예술 즉 「1% Art in Civic Architecture」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공 건물이나 공공공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김지삼, 1990).

일본의 경우는 1978년에 神奈川縣의 「文化を 위한 1% 시스템事業」이나 兵庫縣의 「生活文化를 만들기 위한 1% 시스템事業」에서 시작된 각 自治團體가 추진하는 「彫刻이 있는 市街地 만들기」事業을 유사한 제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처럼 특수한 사업으로 위치를 굳힌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도시공원의 정비, 재개발사업 등에 부수하여 일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 모두가 각 自治團體에서 적립된 기금이나 自治團體豫算으로 시행된다는 것이다(竹田直樹, 1993).

즉, 소유의 개념에서도 분명히 공적 공간인 공공 open space에서의 미술작품의 설치 작업이 공공의 기금이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며 공공 open space에 대한 공공자본의 사회적 투자라는 차원에서 도시라는 특수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이 제도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sup>6)</sup>,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근본적인 사항인 설치공간의 문제가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외국의 유사제도에서는 적용대상 건축물이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거나 공공 open space이므로 작품의 설치계획 단계에서 대상지의 장소적·공간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설치공간의 공간적 넓음으로 해

6) 이 제도의 正當性에 관해서 金(1985)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市民 또는 國民의 健康을 지키는 것이 政府의 책임이듯이 社會的 空間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늘리는 것도 정부의 자연스런 책임이다. …美化해야 할 대상이 개인과 정부 사이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다. 都市의 많은 건물은 個人的 所有이기도 하지만 公共의 이용에 제공되고, 視界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社會的 性格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에 노출되는 개인의 建物을 建物 所有主가 자발적으로美化해야 겠다는 動機는 經濟 論理로 보아 별로 實現性이 없다. … 이런 상황에서는 政府가 建物의 美化를 강제, 규제할 수 있는 正當性을 가진다. …” 즉, 개인의 편익에 앞서는 社會的 利益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社會的 利益을 대변하는 政府가 個人에게 建物의 美化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공간적 제약이 미미하다 하겠다. 즉, 점이나 선적 형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공간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나 장르의 예술품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Fig. 10, 11, 12, 13).

한편, 법적으로는 분명 개인 소유의 공간인 '대지내 공지'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의 시계에 노출되며, 도시가로와 인접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간 혹은 공적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런 대지내 공지가 개발주체의 경제원리와 부지와 관련된 여러 법규<sup>7)</sup>에 의해 다양한 형태나 장르의 예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에 의존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다보니 도시 오픈스페이스라는 맥락하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단위건물 위주로 '장식화' 된다는 점이다.

1994년에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는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을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었다(한국일보, 1994.10.18).

물론 이런 결정이 추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개정령(1995. 7. 13)에 의해 백지화되고 오히려 종전의 '권장의 의무화' 사항에서 단순 '의무화' 사항으로 더 강화되기는 했으나 건축공사비의 1%에 상당하는 예술장식품의 설치를 강요받는 건축주에게는 과도한 규제임을 반증한다 하겠다.

이처럼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는 건축주가 도시문화환경 조성이나 기업의 공공미술에의 기여 혹은 설치된 예술품의 공공자산화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의 조건부로 또는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예술장식품 설치 작가

의 선정은 브로커의 알선에 의해서나 건축주와 작가의 알음알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땅값이 아까운 건축주는 심한 경우 주차장 후미진 구석에 예술장식품을 방치하기도 한다(Fig.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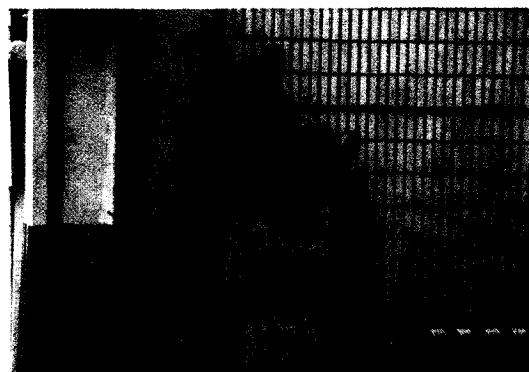


Fig. 17. Environmental sculpture left near parking garage

아울러 위 규정이 해당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하겠다.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 규정의 원래 취지가 '도시가로 환경정비와 미화'였다면 건축물이 건축되는 해당 부지의 도시가로에서의 위치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실시에 따른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의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은 도시가로라는 복잡하고 특수한 환경의 개선을 공공의 자원으로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로 발전되지 못하고 민간자본에 의존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대지내 공지라는 설치공간의 한

7) 대지내 공지와 관련된 규제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제한, 대지내의 공지,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통로, 주차장 규정 등이 있으며 이런 규제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공간구성을 분석한 결과 관련법규가 대지내 공지의 규모, 위치, 용도를 건물의 물리적 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부공간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이라는 연구는 이미 발표된 바 있다(김선미, 1986).

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시가로 환경정비와 미화'는 단위건축물의 부설 예술 '장식품'의 '집합'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겠다.

#### IV. 결론 및 제안

옥외 예술장식품의 설치공간인 대지내 공지가 법적으로 분명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옥외 예술장식품의 88.3%가 해당 부지에서 일반 대중에게 시각적·물리적으로 개방된 공용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분석대상 예술장식품의 69.1%가 녹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녹지의 형태가 점적 형태(20.6%)나 선적 형태(60.1%)가 대부분으로, 결과적으로 규모에 있어서 중·소형(85.2%)의 작품이 설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가로에서 혹은 대상부지에서 하나의 구성적, 의미적 요소로써 대중과의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주변 공간에 방치된 듯 놓여져 도시 공간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지난 10여년에 걸쳐 도시가로 환경정비와 미화를 위해 설치된 수많은 옥외 예술장식품을 문폐조각, 간판조각 등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옥외 예술장식품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특정의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공용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예술장식품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도 그에 걸맞는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지배치계획 단계에서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계획이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이 그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 open space로 설치공간을 유도하지 못하고,

민간자본에 의존하다보니 개발주체의 경제원리와 부지와 관련된 여러 법규에 의해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나 장르의 예술장식품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할 수 밖에 없는 대지내 공지로 설치공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1993년부터 개정된 설치기준에서 예술장식품의 설치 장소가 현행 건축대지내로 국한하던 것이 비록 건축주의 동의하에서 이지만 '공공의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을 기존의 협소한 대지내 공지에서 도시내 공공 오픈스페이스로 발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즉, 건축비의 1%를 건축주가 그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해당 도시와 도시민에게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면 구태여 '내집앞' 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 규정에 의해 건축주가 협소한 대지내 공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예술장식품 설치의 비용을 각 지방 자치단체가 각각의 특성이나 도시성격에 맞는 총체적인 '도시가로 환경정비와 미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공공기금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1%의 차등적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술품설치를 대지내 공지에 설치할 때와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공공기금화 할 때 1%의 비율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로 환경정비와 미화'를 각 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의 희생 없이도 공공부문에 적극성을 띠울 수 있으며, 현행법에서의 사업주체인 민간자본(기업이나 개인)은 또 다른 차원에서 홍보효과(예를 들어 도시공원이나 광장에 설치했을 때 작가 뿐만 아니라 후원인으로서의 기업이나 개인을 명시함으로써)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시민은 가장 규모 있는 예술적 접촉을 통해 환경에 유입되는 질 높은 예술품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조각공해'의 염려를 벗을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나 장르의 예술기획을 공공공간에서 전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즉, 공원, 가로, 광장 등 여러 유형의 도시 내 공공 오픈스페이스에 그 공간에 어울리는 다양한 모습의 예술품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공간에서 일시적인 옥외조각 공모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미술의 발표영역을 미술관에서 도시공간으로 장소의 확장 뿐만 아니라 미술의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항구적인 작품의 설치와 비교해서 특별기획전에서는 미술과의 빈번한 기회 접촉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작품의 설치에서 올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설치공간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1%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하겠다.

### 인용 및 참고 문헌

1. 金基煥(1986), “都心商業地域의 基地內 空地에 關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 金文模(1990), “大都市 基地內 綠地 擴大方案에 關한 研究”, 漢陽大 環境科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 金善美(1986), “基地內 空地의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 서울市 幹線道路邊 大型建物의 利用實態 分析을 通하여-”,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 金知三(1990), “우리나라 建築物 設置彫刻에 關한 研究”, 東國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 金炯國(1985), “大衆社會의 公共彫刻”, 「學園」, 여름號, pp.308~309
6. 大韓建築士協會(1986), 「都市環境과 造形藝術-建築과 環境 彫刻를 中心으로-」, 서울:집문사:18-22, 24, 55, 84
7. 배삼식(1986), “彫刻과 都市環境에 關한 研究”, 東國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서울市建築士會 法規委員會編(1993), 「'93 建築法解說集」, pp. 441~453
9. 서울市(1986-1993), 「서울市政」
10. 서울시(1987-1993),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
11. 孫太玉(1989), “住居地域內 商業街路邊 建物의 外部空間에 關한 研究 서울市 방배동을 中心으로”,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2. 李沅宣(1986), “都市設計 分析을 通한 商業地 基地內 空地에 關한 研究”, 高麗大 大學院 碩士 學位論文
13. 崔圭利(1982), “環境彫刻의 概念과 造景設計에 關한 活用 方案에 關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4. 최병상(1990), 「環境彫刻」, 美術公論社, pp.112, 172, 212
15. 崔淑重(1985), “우리나라 公共美術의 活性化方案을 위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6. 최태만(1995), 「韓國彫刻의 오늘」, 韓國美術年鑑社, pp.81~83, 184, 147
17. 玄重英(1974), “오픈스페이스의 概念과 構造에 關한 研究 - 都市 景觀 構造와 이미지”,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8. Irwin, Robert(1985), 「Being and Circumstances : Notes toward a Conditional Art」, Larkspur Larkspur Landing : The Lapis Press, pp.26~29
19. 宮城俊作(1991), “アメリカ合衆國の環境藝術に みる ラント”スケーフ°テ”サ”インへの潜在的 影響”, 「造園雜誌」:54(5):96~100
20. 竹田直樹(1993), 「ハ”フ”リック アート 入門」東京:公人の 友社:48-49

## 부록 I. 서울市 建築物附設 藝術裝飾品 審議臺帳中 分析對象 屋外 藝術裝飾品 現況(1987년~1993년)

* Figure	** 연번	위치	건축개요				예술장식품			
			건물용도	층수	연면적 (m <sup>2</sup> )	건축공사비	작품명	재료 (색상)	규격 (m)	작품가액 (천원)
1	560	서초구 서초동 1344-13	업무시설	5/5	11,370	7,470,000 천원	여명	화강석	2.0×1.0×2.0	75,500
2-1	165	강남구 삼선동 158-9, 24	업무시설	4/14	14,951.12	6,567,600	결실의 계절	화강암	1.8×1.6×0.7	70,000
2-2	493	강남구 역삼동 720-2, 3	업무시설	15/4	7,901.43	5,115,805 천원	산책	청동	1.0×2.5×1.9	52,000
2-3	149	서초구 양재동 225와 1필지	트럭 터미널	4/1	24,011.67	7,341,822 천원	MASS 새벽	CERAMIC 금선	0.65×0.90×1.7~2.0 1.3×1.7×2.7	70,874 10,000
2-4	80	서초구 서초동 1337-2	판매 업무	-4/13	13,911.74	52,375억원	사유예의한유출	화강석	1.7×0.6×1.7	27,500
3	322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업무시설	-5/11	37,532.74	26,404,400 천원	소리-대지	화강석, 청동	2.8×3.45×5.8	270,000
4-1	115	서초구 서초동 1306-8, 1306-9	업무	-4/14	9,510		접-지	화강석	2.72×1.4 ×1.12	50,000
4-2	211	서초구 서초동 1588-8	업무시설	14/4	7,227.19	3,542,000 천원	합창	청동	1.2×1.5×3.3	36,000.
5	633	중구 을지로6가 18-220	업무시설	16/4	14,622	13,159,000 천원	인간 - 현대인	브론즈 + 오석	2.4×3.8×3.5	131,590
6	465	강남구 논현동 192-19, 20	업무시설	15/3	6,556.18	4,452,800 천원	작품92-10 의 4점	대리석	0.15×0.12	45,000
7-1	517	영등포구 당산동 2가 160-2	주차장	-3/10	13,805	3,520,000 천원	평화	화강석	0.9×1.88×0.8	35,200
7-2	255	서초구 반포동 51-12	업무시설	8/3	12,113.35	6,314,000 천원	작품-1 의 1점	가평석	0.93×0.93 ×4.11	66,000
8-1	420	강남구 대치동 629-630	업무시설	7/3	12,397.46	8,250,000 천원	성장	청동	1.6×1.17×2.98	81,680
8-2	670	동작구 신대방동 470-8	업무시설	11/-4	28,655	19,900,000 천원	평화를 위하여	청동	1.8×0.8×2.6	104,000
9	419	양천구 목동 7-1브록	방송통신 시설	20/5	48,493.65	34,705,000 천원	창세에서 뮤시까지 외 5점	스틸	2.1×3.15×4.2	401,130
14-1	97	강남구 역삼동 828-10	판매 업무	10/-3	18,112.83	42.06억	잉태	화강석 대리석 청동	1.2×0.9×5	49,070
14-2	301	서초구 서초동 1329-4, 5	업무시설	15/5	9,655.22	5,830,000 천원	화합	청동	1.0×1.1×1.8	59,000
15	241	서초구 서초동 1338-21	업무시설	20/7	31,642.79	14,232,400 천원	가족	청동	1.2×0.8×3.2	91,680
16	189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업무시설	-3/12	9,981.2	4,400,000 천원	만남	파이프	5×3.5×7	68,054
17	444	중구 다동 32	업무시설	19/6	37,015.87	51,195,300 천원	흔들리는 조각 외 3점	대리석	2.7×1.1×1.6	512,231

\* 본 논문에 인용된 Figure를 지칭함.

\*\*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에 기록된 1번부터 687번까지의 연번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번을 지칭하며 지면관계로 본 논문에 인용된 옥외 예술장식품만 수록하였음.

## 부록 Ⅱ. 屋外 藝術裝飾品의 項目別 分類結果

Figure 번	* 연	설치공간의 입지 유형			설치공간에서 표면재료의 유형			녹지의 형태			안내판			휴게편의		조명 시설		좌대			
		전 용 공 간	공 용 공 간	전 이 공 간	녹 지	포 장 면	기 타	점	선	면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작가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 설명								
1	560			○		○					○				○		○		○		
2-1	165		○		○			○			○					○		○	○		
2-2	493		○				○								○		○		○		
2-3	149	○ ○			○ ○				○		○ ○		○			○ ○		○ ○		○	
2-4	80		○		○			○			○		○			○		○	○		
3	322			○		○					○					○ ○				○	
4-1	115		○		○			○			○					○ ○			○		
4-2	211		○		○					○					○		○		○		
5	633		○		○						○		○		○		○			○	
6	465		○				○ ○								○		○		○ ○		
7-1	517		○		○			○							○		○		○ ○		
7-2	255		○				○ ○				○					○		○		○ ○	
8-1	420		○		○			○			○		○		○		○		○ ○		
8-2	670	○			○			○							○		○		○ ○		
9	419	○ ○			○ ○				○		○ ○					○ ○		○ ○		○	
14-1	97		○				○ ○								○		○		○ ○		
14-2	301		○		○			○			○					○ ○		○		○	
15	241		○		○			○			○		○			○ ○		○		○	
16	189		○			○									○		○		○		
17	444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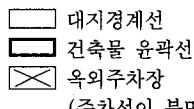
\*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심의대장에 기록된 1번부터 687번까지의 연번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번을 지칭하며 지면관계로 본 논문에 인용된 옥외 예술장식품만 수록하였음.

계	223 (점)	23	197	3	154	39	30	46	134	43	105			118	23	200	82	141	183	40
	100 (%)	10.3	88.3	1.4	69.1	17.5	13.5	20.6	60.1	19.3	94	11	12							
											47.1			52.9	10.3	89.7	36.8	63.2	82.1	17.9
											42.2	4.9	5.4							

\* 분석대상 223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류결과임

**부록 III. 分析 對象地에서 代地內 空地의 空間構成 및 藝術裝飾品 設置位置**

■ 범례(non scale)



(주차선이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

- 예술장식품위치
- 농지
- ▲ 보행자 진입통로
- △ 차량진입통로
- 도로경계선

\* 연번은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설치대장에  
기록된 연번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번을 말하며  
지면관계로 본 논문에 인용된  
것만 수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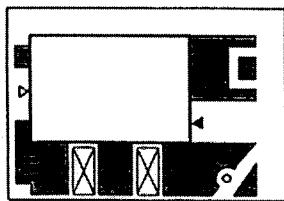


Fig. 1 (연번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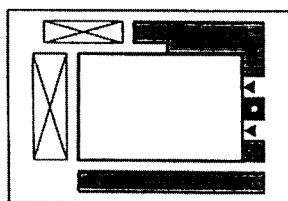


Fig. 2-1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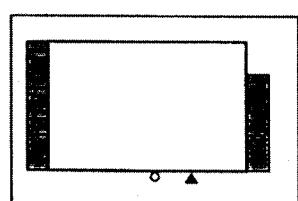


Fig. 2-2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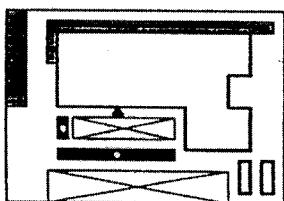


Fig. 2-3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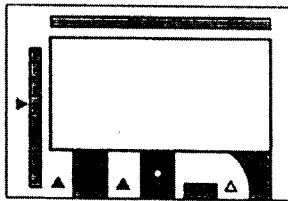


Fig. 2-4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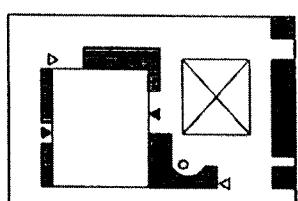


Fig. 3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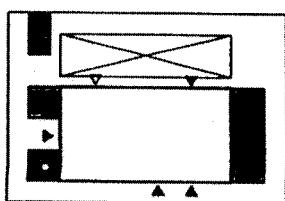


Fig. 4-1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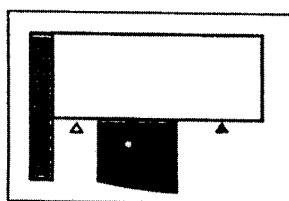


Fig. 4-2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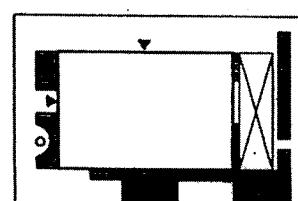


Fig. 5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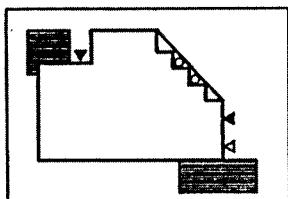


Fig. 6-1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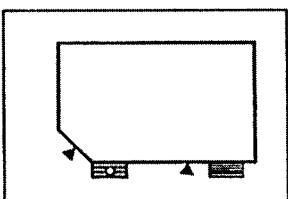


Fig. 7-1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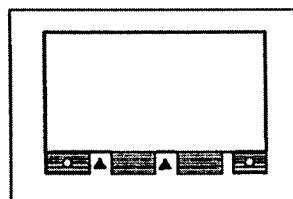


Fig. 7-2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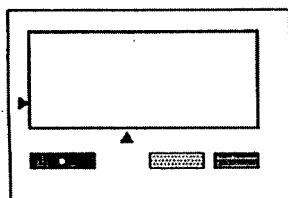


Fig. 8-1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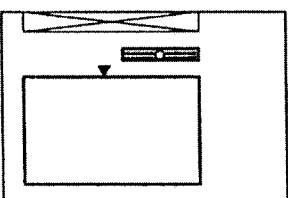


Fig. 802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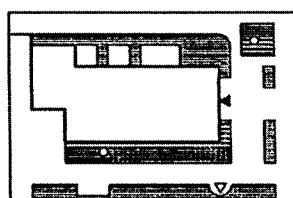


Fig. 9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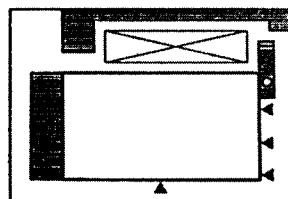


Fig. 14-1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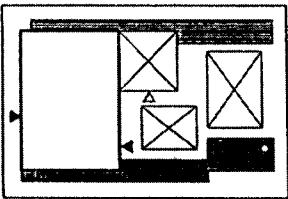


Fig. 14-2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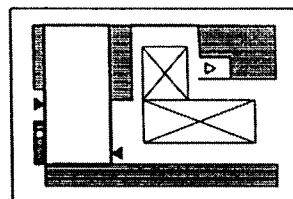


Fig. 15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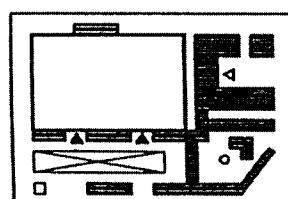


Fig. 16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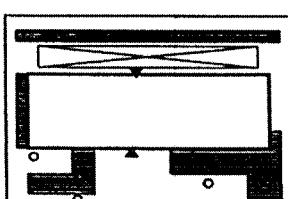


Fig. 17 (444)